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11. 26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하는 흡연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생의 정신적·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의(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실태조사(안 제5조)
-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(안 제6조)
- 간접흡연 예방(안 제7조)
- 금연구역 표시(안 제8조)
- 홍보(안 제9조)
- 위탁(안 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수립하는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,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표시를 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안 제10조에는 전문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11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기에 흡연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